

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496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2024. 8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심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위원장 자격 및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나.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라. 그 밖의 사항
- 입법예고
가) 예고기간 : 2024. 6. 28. ~ 7. 18. (20일)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부서협의결과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중앙 및 도 관련부서
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
나) 경기도 : 예산담당관

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교육문화국장”을 “예산업무 담당 실·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문화·관광, 교통 업무 담당 실·국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·소 | | 예산과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실·과·소장 성명 | 예산과장 조은정 |
| | 팀장 직위·성명 | 예산1팀장 강민정 |
| | 담당자 성명·전화 | 지방행정서기 이유숙(☎2049)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 선(互選)하며, 부위원장은 <u>교육문화 국장</u>이 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특정 성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<u>교육문화국장, 교통 건설국장, 예산과장</u></p> <p>2. (생 략)</p> |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예산업무 담당 실·국장</u>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<u>문화·관광, 교통 업무 담당 실·국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|

지방재정법

제3장 예산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(이하 “중기지방재정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5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

1.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
3.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
4. 분야별 자원배분계획
5.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
6. 의무지출(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(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
7.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
8. 통합재정수지[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(純) 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] 전망과 관리방안
9.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국가의 재정운용방향
2.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
3.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
4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

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7. 16., 2014. 5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·제2항·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37조의3(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)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. 12.>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1. 1. 12.>

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신설 2021. 1. 12.>

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. 12.>

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 <신설 2021. 1. 12.>

1.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2.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

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<신설 2021. 1. 12.>

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. 12.>

[본조신설 2014. 5. 28.]

[제37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<2023. 4. 11.>]
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8. 3. 27., 2020. 1. 29.>

1.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)
2. 재무제표
3. 채권관리 현황
4. 기금운용 현황
5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6. 지역통합재정통계
7.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8. 중기지방재정계획
9. 제36조의2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
10.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- 10의2.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
11.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12.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
13.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14.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15.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
 - 가. 교부현황
 - 나. 성과평가 결과
 - 다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
 - 라.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
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1. 15.>

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”는 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”로 본다. <신설 2022. 11. 15., 2023. 4. 11.>

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2. 11. 15.>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2. 11. 15.>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5. 13., 2022. 11. 15.>

⑧ 제1항, 제2항,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22. 11. 15.>

[전문개정 2014. 5. 28.]

[제목개정 2015. 5. 13.]

김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.7.12.>

제2장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

제2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
2.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3.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
4.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
5. 「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에 관한 사항<개정 2023.7.12.>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23.7.12.]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3.7.12.>

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부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된다. <개정 2017.6.30, 2018.9.3.,2020.12.31,2023.7.12.,2024.3.27.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3.27.>

1. 당연직 위원 : 교육문화국장, 교통건설국장, 예산과장 <개정 2017.6.30, 2018.9.3.,2020.12.31.>
2. 위촉직 위원 : 재정분야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[제목개정 2023.7.12.]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3.7.12.>

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23.7.12.>

[제목개정 2023.7.12.]

제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<개정 2023.7.12.>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개정 2023.7.12.>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<개정 2023.7.12.>
4.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<신설 2023.7.12.>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신설 2023.7.12.>

[제목개정 2023.7.12.]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<2017.6.30 조제목 개정>

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<개정 2017.6.30>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개정 2017.6.30>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6.30>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신설 2023.7.12.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<삭제 2023.7.12.>

④ <삭제 2023.7.12.>

⑤ <삭제 2023.7.12.>

⑥ <삭제 2023.7.12.>

제8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서 제출과 서면심의회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3.7.12.]

[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<2023.7.12.>]

제9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[제8조에서 이동 <2023.7.12.>, 종전 9조 <삭제 2023.7.12.> <개정 2020.9.29.>]

제10조(비밀의 준수)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장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

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시의 지방재정공시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.<신설 2023.7.12.>